

I 본 일반구매조건은 제안, 견적, 구매주문에 관한 모든 의뢰서에 적용되며, 필수 구성요소이다. 고객은 공급자가 다른 일반계약조건이나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

## 1. 용어 정의

본 문서에서 **계약**이란, 제 2 조에서 설명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어느 당사자의 **계열사**란 그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법인, 합작회사, 기타의 사업체를 말한다. 어떤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경영이나 정책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이 의결권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이든 상관없이, 그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이란 (주)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3층 06675) 또는 구매주문서나 제안의뢰서를 발행하는 그 계열사를 말한다. **DSM (Group)**은 Koninklijke DSM N.V 와 조직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각각의 기업이 DSM 그룹의 기업이다. **상품**이란 구매주문서에 적시된 대로 공급하게 될 제품, 재료, 액체, 장비, 디자인, 소프트웨어, 임대 재산, 보관 상품, 관련 문서 일체를 말한다. **구매주문서**란 관련 문서를 포함해 고객이 발행한 주문서를 말한다. **서비스**란 구매주문서에 적시된 대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와 관련 인도물품 일체를 말한다. **공급자**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이나 사업체를 말한다.

## 2. 승낙

고객이 발행한 관련 구매주문서와 함께 본 일반구매약관은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계약조건과 상품 인도 계약조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승낙했을 때 양자간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구속력 있는 계약). 공급자에 의한 변동사항은, 고객이 이를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구매주문서의 어떤 부분을 실행하면, 그것은 공급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승낙한 것이 된다.

## 3. 상무 조건

**3.1** 공급자는 계약서에 언급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수행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적시한 경우가 아닌 한, 가격은 (i) 고정 확정 가격으로, (ii)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지만, (iii) 기타의 조세, 관세, 징세, 요금(라이선스 요금 포함), 대금 등 일체와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다.

**3.2**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된 상품/서비스에 대해 공급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객은 청구서를 수령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 일 후에 은행이체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단, 그 청구 내역은 정확해야 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3.3** 고객은 고객이 치러야 할 결제를 다른 DSM 그룹의 기업에게 결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는 공급자에 대한 관련 결제 의무로부터 고객을 면제시킨다. 청구 내역에 논란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자신의 의무를 늦출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고객은 공급자나 공급자의 계열사에게 지고 있는 금액을, 공급자나 그 계열사가 고객에게 지고 있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4** 대가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공급자는 모든 비용과 지출, 투입된 근로 시간 등을 기록해두어야 하며, 고객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 4. 법률준수

**4.1**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i)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ii) 무역수출금지, 수입과 수출 규제, 제재 당사자 리스트 등 국제 무역에 관련된 모든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표준, 명령을 모두 준수한다.(규정준수요구사항)

**4.2** 공급자는 본인의 피고용인과 대리인, 하청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어떠한 부적절한 이익을 수락,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거나 (ii) (a)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b) 해당 규정준수 요구사항의 위반이나 침해를 유발할 제품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침해를 확약한다.

**4.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공급된 서비스의 결과물과 상품이 좋고, 시장성이 있을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환적 및 도착지 증명에 필요한 일체의 라이선스, 허가서, 최종사용자의 진술 등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한다.

## 5. 시간

공급자는 지연이나 중단 없이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6. 상품의 인도, 보증, 인수

**6.1**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의 인도 조건은 Incoterm DDP 고객 장소로 한다.

**6.2** 적절히 포장되어 있어야 인도의 효력이 있으며 값비싼 재활용 포장재는 공급자가 회수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운송, 사용, 취급, 처리, 보관을 위해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문서, 정보, 명세서, 설명서를 고객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관례상의 모든 분석/규격 증명서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원래의 수량과 상태와 조건으로 재 인도해야 한다.

**6.3** 공급자는 상품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상품이 명세서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아직 한 번도 사용된 바 없으며, 우수한 재료와 공정을 거친 것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고, 어떠한 담보, 저당, 보증, 유치권도 없으며,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을, 고객이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는 보증/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증은 고객과 그 고객의 고객에게까지 확장된다.

**6.4** 공급자는, 인수 일자나 첫 사용 일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짜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상품을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수리된 상품이나 부품, 또는 교체된 상품이나 부품은, 수리일자나 교체일자로부터 다시 2년 동안 보증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교체용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 가급적 해당 상품을 사용자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보증기간은 상품이 사용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6.5** 고객은 (i) 합의된 시간에 인도되지 않은 상품, (ii) 합의된 용량/수량으로 인도되지 않은 상품, (iii) 포장이 부적절하거나 훼손된 채 인도된 상품, (iv) 다른 하자가 있는 상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의 위험과 비용은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하며,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고객의 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6.6** 점검, 테스트, 인수, 결제 등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자신의 의무와 보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 7. 서비스의 이행과 인수

**7.1** 공급자는 서비스의 품질과 결과를 보증한다. 공급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과 지정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해야 하며, 선관주의의무(due skill and care)를 다하여 하며, 적절히 잘 관리된 재료를 사용하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7.2** 공급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한 용법이나 취급법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에 제대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3** 인수에 관한 서면 확인서만이 이행된 서비스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 8. 권리의 이전

**8.1** 상품 및 서비스 인도물에 대한 권리는, 계약서에 적시된 인도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고객이 인도 전에 상품에 대해 결제를 한 경우, 권리는 결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8.2** 임대 서비스 계약에 따르는 경우 상품의 권리와 위험은 그대로 공급자에게 존속한다.

**8.3** 참고 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고객 상품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고객에게 존속한다. 이러한 상품의 위험은 상품을 인수한 때에 공급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고객에게 이 상품이 인도된 때에 종료된다.

**8.4** 공급자는 인도물 및 완제품 인도물의 제조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할당된 원자재와 반제품을 구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의 위험은 그 상품에 대한 인수가 있을 때까지 공급자에게 존속한다.

## 9. 점검의 기회

**9.1** 공급자는, 고객과 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상품이나 상품의 제조 공정, 서비스나 그 서비스 일부가 이행될 장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9.2**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제조, 보관, 인도 과정에서의 작업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통제, 시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이나 고객이 지정하는 자가 언제라도 상품의 시험/점검에 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9.3** 점검/시험을 하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10. 변동사항의 통제

(사업) 절차, (원)재료(공급처 포함), 기타 상품/서비스의 명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동사항을 포함해, 상품/서비스(의 이행)와 관련된 일체의 변동사항과 개선사항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고객이 상품을 통제,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11. EU 와 EU 외 국가의 화학물질통제 규정

구매주문서에 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서 공급되거나 유럽연합으로 공급되는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관한 EC 규정 No. 1907/2006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상품이나 그 상품의 물질이 REACH 범위 내에 든다면, 공급자는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의 물질이 REACH의 요건과 완전히 일치함을 입증하고 진술한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등록 번호를 제공한다.

상품이나 그 상품의 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통제 규정의 범위 내에 든다면, 공급자는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의 물질이 이러한 규정들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증하고 진술한다.

## 12. 지속가능성, SHE, 안전

**12.1** DSM의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Triple P (People, Planet, Profit) 가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생성하는데 있어 DSM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공급자는 DSM 웹사이트 [www.dsm.com/supplier-code-of-conduct](http://www.dsm.com/supplier-code-of-conduct)에 나와 있는 이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데 동의한다. 이 행동강령은, 요청을 하면 발송된다.

**12.2** 공급자는 모든 안전보건환경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며, 고객의 현장에서 토지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제한해야 하며, 현장 및 현장 접근 규정과 DSM (네트워크)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적절하고 안전한 운송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아울러 고객의 현지 언어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준비하여 안전하고 바람직하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은 본 계약의 이러한 요소들을 감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안전, 보건, 환경, 보안과 관련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DSM(그룹)의 감독 하에, 이런 사고부터 발생한 오염을 방지, 차단,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 13. 면책, 책임, 불가항력

**13.1**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범위 내에서, DSM (그룹)과 고객과 그들의 이사 및 직원("면책권자")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면책권자들이나 제 3자가 공급자의 상품을 사용,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또는 서비스의 이행 및 면책권자들이나 제 3자가 공급자의 서비스를 배치한 것과 관련하여, 면책권자들에 의해 발생한 모든 실제적 피해와 부수적 피해, 손실, 부상/사망, 비용 등으로부터 그리고 면책권자에게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면책해야 한다. 단, 고객에게 고의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3.2**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과세와 징세를 적시에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제 3자의 과세, 분담액, 청구액 등 자신의 의무와 관련된 모든 청구액과 배상액으로부터 면책권자들을 면책해야 한다.

**13.3**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매출손실, 수익손실, 기타 결과적, 부수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4**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거나 방해되거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불가항력"). 단, 불가항력을 호소하는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단순히 재료, 노동력, 유틸리티가 지연 공급된 사실은 불가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불가항력 상황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객은 서면 통보를 하고 본 계약을 (일부)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고객은 공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제 3자로부터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수량은 (최소)량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 14. 비밀유지

고객이 제공하거나 고객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그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급자의 직원이나 제 3자에게만 허용되며, 공급자가 법원의 명령이나 법령상의 의무로 인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경우 공급자는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요구를 받는 즉시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급자는 그 정보에 관한 사본을 보유할 수 없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존재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공급자와 그 직원들은, 요청이 있을 시,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 15.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15.1** 공급자에게 공개된 정보와 재산과 재료는 그대로 고객의 재산으로 존속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고객이나 고객의 계열사가 가진 상표, 상호, 도메인 이름, 특허, 디자인, 저작권, 기타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허가를 받고 사용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지정된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15.2** 공급자는 상품/서비스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15.3** 공급자는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공급자가 개발하거나 공급자를 대신해 개발된 지적재산권, 노하우, 저작권, 기타의 권리 등을 현재의 양도 방식과 미래의 양도 방식을 통해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

**15.4**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개발된 소스코드, 서브소프트웨어, 문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고객에게 두거나 고객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공급자에게 존속하며, 공급자는 비독점적, 양도불가능, 취소불가능한 영구 라이선스를 특정 장비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에게 부여해야 한다. 고객은 다른 DSM 그룹의 기업들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6. 보험

공급자는 구매주문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공급자는 공급자의 보험전보범위를 증명하는 보험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17. 해지와 보류

고객은 다음의 경우에 자신의 의무 이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이때 공급자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i) 공급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청산 상태에 있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중단, 정지되거나, 법원 명령이나 예방적 법률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ii) 규정 준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 건강, 환경과 보안에 관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iii) 제 10 조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해지 후, 고객은 수령한 상품/서비스를 공급자에게 전부 반환하거나 상환 금액을 제하고 일부 반환한 후 그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재양도할 수 있다.

#### 18. 기타

**18.1** 본 일반구매조건에서 어느 규정이 무효이거나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정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그 무효 또는 실효 규정을, 가급적 원래의 조항과 유사한 의미의 규정으로 대체한다는데 동의한다.

**18.2**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이후에 그 당사자의 의무 집행 권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당사자가 어떤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이전의 위반이나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권리포기는, 구체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서면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효력도 없다.

**18.3** 공급자는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이때 동의를 있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 본 계약이나 본 계약의 일부를 DSM 그룹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다.

**18.4**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어느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간에 파트너십이나 공동합작관계나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8.5** 본 계약에는 법률충돌 원칙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률만을 독점 적용한다. 1980년 4월 11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국제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상품의 운송은 서비스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조약 규정들이 적용된다.

**18.6** 구매주문서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이때 항소의 권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쟁 중일 동안,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상 자신의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없다. 단 그 의무가 분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의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8.7** 본 계약의 만료, 해지, 취소는, 명시적으로 또는 그 속성상 만료, 해지, 취소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권리나 의무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진술이나, 보증, 비밀유지 의무, 지적재산권, 누적 권리인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리켜 "DSM Nutritional Products AG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구매조건"이라고 한다.